종사자 윤리 지침

당 시설 (해오름요양원)에 종사하는 요양업무 종사자는 자신이 속한 직업의 윤리를 인식하고 실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한다.

1. 수급자 권리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윤리

- ① 요양업무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② 요양업무 종사자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③ 요양업무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④ 요양업무 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⑤ 요양업무 종사자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 ⑥ 요양업무 종사자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 ⑦ 요양업무 종사자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 ⑧ 요양업무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요양업무 종사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직업적 태도)

어떤 직종이든지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으나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요양보호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업무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업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① 요양업무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 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존중되어야 하고 요양업무종사자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 해서는 안 된다.
- 요양업무 종사자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사를 물은 후 실행한다.
- ② 요양업무 종사자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업무는 요양업무종사자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 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의 업무능력의 미숙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업무 종사자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요양업무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 ④ 요양업무 종사자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요양업무종사자는 시설직원, 동료요양업무종사자,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⑤ 요양업무 종사자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와 지도 발전의 자료로 보관한다.
- ⑥ 요양업무 종사자는 입소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입소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입소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춘다.
- 대화는 천천히 하도록 하며 앉는 위치, 몸짓, 손놀림,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따라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 입소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 ① 요양업무 종사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
- 입소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입소자, 가족, 혹은 타 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려는 행위
- 입소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 입소자 소유나 공용전화로 사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
- 입소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 입소자를 존중하고 입소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입소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입소자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내외에 발설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 8 요양보호대상자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⑧ 기타 종사자의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1.3 해오름요양원 운영규정] 제 13조에 따른다.